

의안번호	제 32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7. . . (제 회)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1997. 10. 1 .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
----------	----

제출일자 : 1997. 10.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근거조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항목과 부과금액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과태료부과 항목별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함.
(안 제3조)

3. 법적근거

- 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동법시행령제42조 및 시행규칙제67조
- 나. 환경부 예규 제140호(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

4. 개정조례(안) : 별 첨

5. 입법예고 : '97. 7. 12 ~ 7. 31(20일간) 공고 게시함.

예고사항에 대한 기관단체나 개인 의견 :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징수 하였거나 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표 1]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 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u>담배꽂초, 휴지등</u>)을 버리는 행위	25	25	25
	나.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9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 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18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40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 (<u>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u>)	500	700	1,000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관리 법	2. <u>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u> 가. <u>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 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 하지 아니한 경우</u>	100	200	500
	나. <u>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u>	50	50	50
	3. <u>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 항)</u>	300	500	1,000
	4. <u>일반폐기물처리업자중 조례로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자 (법 제17조제4항)</u>	500	700	1,000
	5. <u>일반폐기물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의3항)</u>	1,000	1,000	1,000
	6. <u>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u>	300	500	1,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표 1]

개 정 (안)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비 고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반 (이 후)	
1.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 (법 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 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50	50	공공지역등에서 담배꽂초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 보관기구(비닐 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100	100	공공지역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등을 비닐봉지등에 담아 지정된 장소외의 곳 에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 생된 폐기물을 수거 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150	180	
라.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 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400	자기집 또는 제3의 장소 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운 반장비를 이용하여 공공 지역등에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 생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4조의2 폐기 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0	700	1,000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 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 생되는 폐기물을 공공지 역에 버리는 행위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비 고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반 (이 후)	
2. 폐기물을 종류, 성상 별로분리·보관·배출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지정된 규격봉투 미사용 및 무단소각 정해진 분리배출방법및 배출장소,일시,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등
가. 생활폐기물 배출자 일 경우	100	200	500	
나.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일 경우	300	500	1,000	
3. 폐기물의 보관시설,용 기의 설치 또는개선,대 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300	500	1,000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1,000	1,000	1,000	
5. 폐기물재생처리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의 2 제1항)	1,000	1,000	1,000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비 고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반 (이 후)	
6. <u>폐기물재생처리 시설 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 한 자 (법 제44조의2 제3항)</u>	<u>1,000</u>	<u>2,000</u>	<u>3,000</u>	
7. <u>장부를 기록 또는 보 존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기록한 자 (법 제24조제3항, 법 제41조)</u>	<u>300</u>	<u>500</u>	<u>1,000</u>	
8. <u>기술관리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9조제1항)</u>	<u>300</u>	<u>500</u>	<u>1,000</u>	
9. <u>폐기물처리담당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 나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u>				
가. <u>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일 경우</u>	<u>300</u>	<u>400</u>	<u>500</u>	
나. <u>“가”이외의 교육대 상자</u>	<u>300</u>	<u>500</u>	<u>1,000</u>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비 고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반 (이 후)	
10. <u>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3조제1항)</u>	300	500	1,000	
11. <u>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제1항)</u>	300	500	1,000	
12. <u>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1항)</u>	300	5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개 항목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